·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·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○ 발 의 자 : 봉양순 의원 외 24명

○ 의안번호 : 제1706호

○ 발의일자 : 2024년 4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4월 8일

2. 제 안 이 유

○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별하여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 중 생략되어 있는 '생태계', '소생태계', '자연환경복원사업'의 정의를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생태계. 소생태계의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신설)
- 나.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함(안 제2조제9호 신설)
- 다.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상위법령에 따라 구분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「자연환경보전법」및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 중인 주요 용어 정의를 추가 보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가 2022년 전부개정된 것으로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생물다양성법")에서 위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이 변경된 것임.
-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, 기존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'보전·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'에 관한 내용이 주로 명시되어 있어, 「생물다양성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에서 40회 사용하고 있는 '생태계'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하여 정의하는 것이며, 같은 조 제2호 '소생태계'는 동 조례 제27조 생태도시의 조성방안에 명시된 것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 합치성을 높이고 있음.

안 제2조제9호는 동 조례 제26조에 명시된 '자연환경복원사업'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태축 복원, 외래생물 교란 복원, 훼손지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태계 복원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[붙임] 자연환경보전법 및 생물다양성법 기본원칙 조항

「자연환경보전법」

제3조(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)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.

〈개정 2020. 5. 26., 2021. 1. 5.〉

- 1.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.
- 2. 자연환경보전은 국토의 이용과 조화·균형을 이루어야 한다.
- 3.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·관리되어야 한다.
- 4.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어야 한다.
- 5.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・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・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6.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,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7. 자연환경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.
- 8.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,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,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지역주민·시민단체·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.

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기본원칙)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. 〈개정 2019. 12. 10.〉
- 1.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.
- 2.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.
- 3.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- 4. 산·하천·호소(湖沼)·연안·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.
- 5.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.
- 6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.